

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
(전화번호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

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[(⑨-⑫)×⑪×10% + (⑮-⑱×105%)×⑭×15%]	
--	--

1.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

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	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(⑦÷⑧)

2.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

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	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(⑩÷⑪)

3.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

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(=⑩)	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	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(⑬÷⑭)

4.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

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(=⑦)	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	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(⑯÷⑰)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
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신청대상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(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)입니다.
2.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$(\textcircled{15} - \textcircled{18} \times 105\%) \times \textcircled{14} \times 15\%$ 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.
3. ⑦, ⑩란의 "임금총액"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4. ⑧, ⑪란의 "상시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,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 - 가.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
 - 나.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, 정년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.
 - 다.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.
 - 라.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.
5. ⑭, ⑰란의 "근로시간 합계"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)의 합계를 말합니다.